

보수교육지침서



사단
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보 수 교 육 지 침 서

제 정	1983.	2.	17
개 정	1983.	6.	8
개 정	1986.	2.	19
개 정	1986.	6.	24
개 정	1987.	3.	2
개 정	1987.	7.	6
개 정	1988.	4.	4
개 정	1996.	11.	12
개 정	2000.	2.	8
개 정	2001.	2.	13
개 정	2006.	12.	19

사단
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목 차

❖ 목 적	1
❖ 방 침	1
❖ 교육실시체계	1
❖ 일 반 지 침	2
❖ 보수교육 기관 및 종류	2
❖ 교육면제대상	2
❖ 경 비	2
❖ 계획의 수립	3
❖ 점 수	4
❖ 승 인	4
❖ 보 고	4
❖ 보수교육기관별 년상한 평점표	5
❖ 감독 및 점수 기재 관리	6
❖ 교육계획 공고	6
❖ 이수증 교부	6
❖ 벌 칙	6
❖ 보 칙	6
❖ 기관별 추진업무	7
❖ 보수교육면제신청서(양식)	8
❖ 보수교육 계획서(양식)	9
❖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양식)	10
❖ 보수교육 참석자 명단(양식)	11
❖ 보수교육참가 카드	12
❖ 보수교육 이수증(양식)	14
❖ 의 료 법	15
❖ 의료법시행령	15
❖ 의료법시행규칙	16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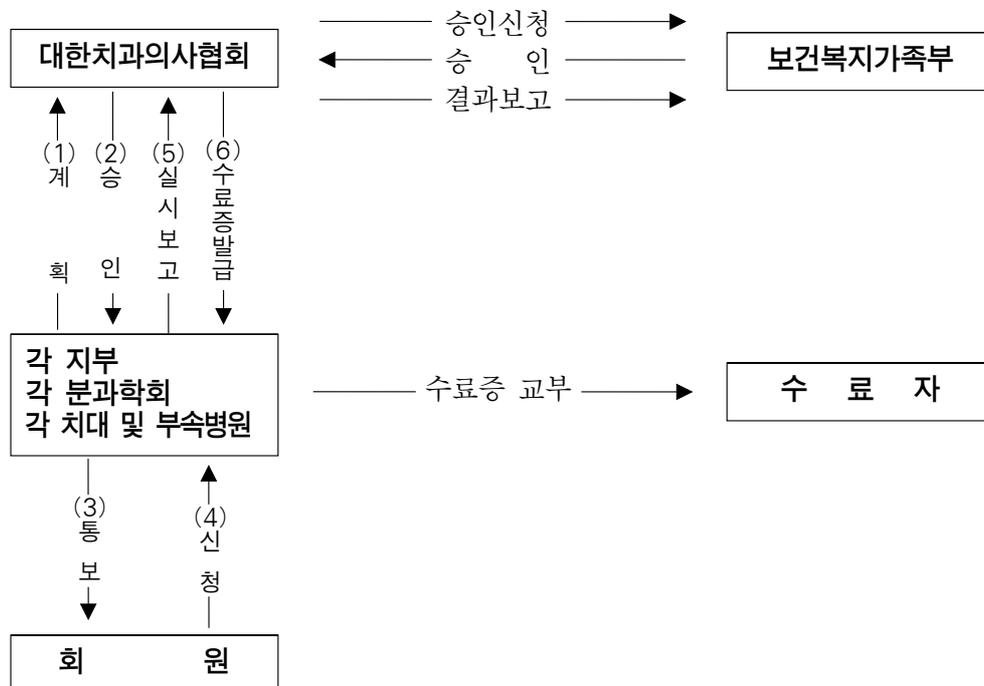
목 적

치과의사의 보수교육목적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치과질환의 다원화에 대처 하고 치의학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신뢰받는 치과의사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에 있다.

방 침

1.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평생교육을 유도
2. “공부하는 치과의사 상”의 부각
3. 참여자의 경비부담으로 자기발전적 주인의식 부여

교육실시체계



일 반 지 침

1. 보수교육 기관 및 종류

기 관	종 류
대한치과의사협회 각 지부 각 분과학회 각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협회가 인정하는 기타기관	종합학술대회 순회치과의사 강좌 시청각 교육 개원의를 위한 연수 강좌 임상 기초 치의학 강좌 기타 각종 학술대회

2. 교육면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하며, 면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치의학 전공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소속 치과의사, 공인연구소 연구요원
- 나. 환자의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
- 다. 군복무중인자 및 공중보건의
- 라. 전공의
- 마. 당해년도 6개월이상 휴직자 및 해외체류자
- 바. 대학원(치의학 관련 전공 석·박사과정)재학생(개원의 포함)
- 사.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개원회원
- 아. 당해년도 12월말 기준하여 만65세 이상자는 년 4점 면제
- 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3. 경 비

수익자 부담원칙

4. 계획의 수립

보수교육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년 11월 말까지 익년도 교육계획서를 수립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신청·제출하여야 한다.

가. 교육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계획의 수립 :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장소 : 피교육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부 시.도에서 실시
- 2) 교육개최일시 및 예정인원
- 3) 강사의 소속 및 교과과목별 이수시간
- 4) 보수교육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 5)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다. 강사자격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

- 1)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2)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자
- 3)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 4)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자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 5)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라. 교육방법 선정

- 1) 강의일변도 지양
- 2) 시청각 교재 활용
- 3) 실습교육 장려

마. 교육내용 선정

- 1) 실제 임상분야
- 2) 최신 치의학 정보
- 3) 치과와 관련된 교양 및 윤리강좌(20%이내)

5. 점 수

년간 8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8점 중 소속지부의 교육을 최소 4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6. 승 인

가. 제반보수교육은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계획의 변경 및 추가는 그 내용과 사유를 30일 전에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7. 보 고

보수교육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고한다.

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일시, 장소, 제목, 연자성명, 보수교육참석자 명단(면허번호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 3) 매 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 협회에 결과보고

보수교육 기관별 년상한 평점표

교 육 종 류	점 수	년 상 한
1) 피교육자		
가) 승인강좌	1시간/1점	- . 각 지부 : 총 8점 - . 분과학회: 총 4점 - . 치과대학: 총 4점 - . 수련치과병원: 총 4점 - . 기타기관: 총 4점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각 보수교육 기관 종합학술대회	1회/4점	- . 4점
다) 초록발표: 구연	1회/2점	- . 2점
라) 전시(포스터, 테이블클리닉)	1회/2점	- . 2점
마) 논문게재	1편/3점	- . 3점
바) 저술(치의학 관계)	1편/4점	- . 4점
사) 국제학술대회 참석: 협회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	1편/2점	- . 2점
2) 교육담당자: 학생, 전공의 교육 직접 담당자	1시간/1점	- . 4점

3) 기 타

- 가) 1과목당 2점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과목의 중복이수는 인정받지 못한다.
- 나) 각 지부의 교육은 1일 4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소속지부(또는 분회)의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강좌를 의무적으로 4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회에서 종합학술대회와 국제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라) 타 지부에서 수강 시 소속지부의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마) 협회주최 학술대회가 없는 해에 지부주체 학술대회는 4점을 인정한다. 단, 1일 8시간 이상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개최 시 별지서식 제4호에 의거한 보수교육참가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8. 감독 및 점수 기재 관리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이수상황을 책임 있게 감독 및 기록하여 수시조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9. 교육계획 공고

치의신보, 협회지고정란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0. 이수증 교부

보수교육이수증 발급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교육을 8점 이상 이수한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협회는 즉각 이수증을 교부한다.

11. 벌 칙

가. 보수교육 불성실기관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

나. 1년 8점미만 이수자는 의료법 제71조를 준용할 수 있다.

12. 보 칙

가. 보수교육기관은 자체평가회를 개최하여 교육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건의토록 하며, 협회는 최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시상할 수 있다.

기 관 별 추 진 업 무

기 관	추 진 업 무
대한치과의사협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전반에 관한 계획, 승인, 시간 책정 및 평가 2. 제도적보완(정관보강 및 지침수립) 3. 교재 및 신자료 4. 교육에 대한 제반사항 안내홍보 5. 수료증 발급 6. 보건복지가족부 정기보고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 치과병원 기타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교재 지속적 발굴개선 2. 교육계획수립 및 개최안내 홍보 3. 자체평가 및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일 자	시 간	장 소	연자성명	소 속	제 목	이수 요청 점수	교육 예정 인원	소 요 예 산		비고
								지부 예산	외교육자 경비부담액	

기 관 명 :

신청기관장 :

인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보수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항 목	내 용				
개최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장 소					
교육내용	연 자	연 계			점 수
참석인원					

※ 참석자 명단 별첨(협회회원대장양식)

(별지 제4호 서식)

보수교육참석자명단

기관명:

연 번	면허번호	성 명	소 속 기 관	비 고

※ 명단은 면허번호 순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참가 카드

(전면)

보수교육참가카드(제출용)	보수교육참가카드(본인보관용)
<p>1. 성 명 _____ No _____</p> <p>2. 면허번호 _____</p> <p>3. 교육종류 _____</p> <p>4. 참가점수 _____</p> <p>5. 교육년월일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p> <p>교육기관 : 대 한치과의사협회 (인)</p>	<p>1. 성 명 _____</p> <p>2. 면허번호 _____</p> <p>3. 교육종류 _____</p> <p>4. 참가점수 _____</p> <p>5. 교육년월일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p> <p>교육기관 : 대 한치과의사협회 (인)</p>

※ 이 절면을 모아 함께 8점이 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수증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2호 서식]

(후면)

(교육기관 보관용)

※ 3항의 교육의 종류에는 강좌, 협회 학술대회 등으로 구분할 것.

(이수자 소지분)
점수: 년 8점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기관별 년상한 평점표

교육종류	점수	년상한
1) 피교육자 가) 승인강좌	1시간/1점	- 각 지방: 총 8점 - 분과회: 총 4점 - 차과회: 총 4점 - 수련과회: 총 4점 - 기타기관: 총 4점
나) 대학과의사협회 및 각 보수교육기관 중 합원술대회	1회/4점	
다) 초록 발표: 구연	1회/2점	- 2점
라) 진시(포스터, 테이블러닝)	1회/2점	- 2점
마) 논문게재	1편/3점	- 3점
바) 저술(의학관계)	1편/4점	- 4점
사) 국제학술대회 참석: 협회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	1회/2점	- 2점
2) 교육담당자: 학생, 전공의 교육 직접 담당자	1시간/1점	- 4점

3) 기 타

- 가) 1과목당 2점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과목의 중복이수는 인정받지 못한다.
- 나) 각 지방의 교육은 1일 4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소속지부(또는 분회)의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강좌를 의무적으로 4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회에서 종합학술대회와 국제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라) 타 지방에서 수강시 소속지부의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마) 협회주최 학술대회가 없는 해에 지방주최 학술대회는 4점을 인정한다. 단, 1일 8시간 이상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개최시 별지서식 제4호에 의거한 보수교육참가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 료 법

제30조(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의 료 법 시 행 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의료법시행령-(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또는 안마사가 법 제30조제3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법 제92조제3항 제1호	70만원

의 료 법 시 행 규 칙

제20조(보수교육)

-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 분야별전문학회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학대학·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학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 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8.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 ① 중앙회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 료 관 계 행 정 처 분 규 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 제4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0)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7일